





# 2012 연간보고서

- 제1장 주요 추진업무
-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 일정
- 제3장 2013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 제4장 2013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 제1장

### 주요 추진업무

#### ☑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제3기 양형위원회는 2013. 2. 4. 제46차 회의에서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중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13. 7. 1.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제3기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3. 4. 22. 제48차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각 2013. 5. 15., 2013. 6. 19.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국민의 법감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였다.

2013. 4. 27. 출범한 제4기 양형위원회는 2013. 5. 7. 제49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 6. 24. 제50차 회의에서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범죄를 제4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각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4기 위원회는 그 임기를 전반기(2013. 4. 27. ~ 2014. 4. 26.)와 후반기(2014. 4. 27. ~ 2015. 4. 26.)로 나누어 전반기에는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약취·유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며, 후반기에는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식품·보건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다.

4기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한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2013. 8.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에 대하여 확정사건 양형자료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 양형인자 추출, 연관성 분석, 선고형분포 등에 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위원단은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양형기준초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13. 12.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후 위원회는 2014. 1. ~ 2.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국민 일반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4. 3.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14. 7. 시행할 예정이다.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에 대하여는 2014. 2. 확정사건 양형자료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2014. 4. ~ 9. 전문위원단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4. 10.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

다. 위원회는 그 후 2014. 11. ~ 12.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국민일반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5. 1.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15. 7.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4기 양형위원회는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 연구 및 검토,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수정 양형기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 수정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Ⅲ 양형기준 적용현황 점검

2009. 7. 1. 제1기 양형기준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1. 7. 1. 제2기 양형기준이, 2012. 7. 1. 제3기 양형기준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2012. 9. 1.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각 시행되었고, 2013. 7. 1.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시행경과를 살펴보고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양형자료 분석관들을 통해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있으며, 양형기준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추후 진행될 양형기준 수정 논의 과정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Ⅲ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업무 개선

위원회는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양형자료조사 및 적용현황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양형자료분석관 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중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양형자료분석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양형자료분석관 정기토론회를 활성화하고 분석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Ⅳ 전문위원 조직 재정비 및 연구과제 위임

위원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위원들에게 양형기준과 관련한 각종 쟁점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문위원단은 각 팀별로 담당할 연구주제를 정하여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작성한 뒤 이를 2013. 2. 4. 위원회 제46차 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원회는 위 연구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한편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위원들의 임기만료시점이 비교적 빨리 도래하게 되는바, 전문위원 연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전문위원을 연임 내지 신규 위촉할 계획이다.

### Ⅴ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양형기준초안 또는 이를 토대로 양형위 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 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이를 최종 양형기 준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위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 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 VI 자문위원 회의 개최

위원회는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2. 1. 9.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후 2012. 4. 2. 양형위원회 제1차 자문위원 회의를 시작으로 2012. 7. 23. 제2차 자문위원회 회의, 2013. 1. 7. 제3차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안 및 양형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또는 변경 과정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지속 적으로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도록 할 것이다.

#### Ⅶ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위원회는 영국 양형위원회(The Sentencing Council for England and Wales) 및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The U.S. Sentencing Commission) 또는 각 주 양형위원회 등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양형위원회 및 독일 등 선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원 또는 법무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형 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외국 양형위원회의 경험을 습득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 양형기준을 대외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문 번역이 완료된 제1, 2기 양형기준에 더하여 제3기 양형기준에 대한 영문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외국 양형위원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제2장

# 양형위원회 회의 일정

2013년도 양형위원회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중 연번 8번의 회의 일 정 및 안건 등은 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예상한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다.

연번	차수	일시	안건
1	제46차 회의	2013. 2. 4.	<ul> <li>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확정</li> <li>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li> <li>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보고</li> <li>제8차 공청회 결과 보고</li> </ul>
2	제47차 회의	2013. 3.25.	<ul> <li>살인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li> <li>2012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 확정</li> <li>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li> </ul>
3	제48차 회의	2013. 4.22.	<ul><li>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li><li>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보고</li></ul>
4	제49차 회의	2013. 5. 7.	● 제4기 양형위원회 위촉식 및 양형위원회 현황 보고
5	제50차 회의	2013. 6.24.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의 건  2013 양형기준 책자 발간 보고
6	제51차 회의	2013. 9. 9.	● 양형기준 초안 심의
7	제52차 회의	2013, 10, 25,	● 양형기준 초안 심의
8	제53차 회의	2013 <sub>.</sub> 12 <sub>.</sub>	<ul> <li>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중 일부 양형기준안확정</li> <li>2014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보고</li> <li>2014년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보고</li> </ul>

### 제3장

### 2013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 T 개요

2013. 1. 28. 전문위원 제64차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위 계획안은 2013. 2. 4. 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전문위원 연구계획은 구체적 양형기준안 설정을 목표로 하여 제3기 양형기준 의결 및 시행,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위원회 회의 일정, 전문위원 조직 정비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3기 위원회 임기 내에는 3기 양형기준 설정 및 살인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양형기준초안 연구 등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과 관련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보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Ⅱ 연구계획안 내용

주제별 연구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 가. 연구 목적

성범죄 양형기준 등의 수정으로 인해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의 수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의 합리적 수정 방안과 수정안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다

#### 나. 연구 내용

살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다른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살인

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 ❷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 가 연구 목적

전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의 합리적 수정 방 안과 수정안의 적정성 여부를 좋합적으로 검토한다

#### 나. 연구 내용

개정 법률 내용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다른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집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및 양형기준안 연구

#### 가. 연구 목적

제4기 양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하고,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한다.

#### 나. 연구 내용

먼저,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하는 원칙 및 고려사항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대상범죄를 선정한 후, 양형실무에 나타난 형종 및 형량 통계 등 분석을 통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에 대한 양형실무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실무에 대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과거 형량의 상향 여부 등을 결정하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인자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대상범죄군별집행유예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수립한 후 구체적 양형기준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정한다.

#### ◢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 가. 연구 목적

제1, 2, 3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양형기준 간의 불균형이나 미비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 수정 방안을 마련한다.

#### 나. 연구 내용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 대상사건의 적용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양형기준 간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불균형 존재 유무 및 개별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수정 필요성을 확인하여 양형기준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 5 집행유예 기준 개선 방안 연구

#### 가. 연구 목적

현행 집행유예 기준의 평가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집행유예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 나. 연구 내용

외국의 집행유예 관련 입법례 및 양형기준을 연구한 뒤 이를 참고하여 현행 집 행유예 기준 적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유예 기준의 기본틀 또는 참 작사유 평가원칙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 6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 가. 연구 목적

양형기준 수정 및 추가 양형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연구한다.

#### 나. 연구 내용

외국의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연구하여 양형기준

의 적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항목을 선정한 후, 우리 양형기준의 평가에 적합한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III**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요약

연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1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2월 ~ 4월	1팀
2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2월 ~ 4월	2팀
3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및 양형기준안 연구	5월 ~ 12월	분담
4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6월 ~ 12월	분담
5	집행유예 기준 개선 방안 연구	7월 ~ 12월	1팀
6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7월 ~ 12월	2팀

# 제4장

# 2013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운영지원단은 위원회가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전문위원의 조사·연구와 회의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 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소속 과별로 수립된 업무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 기획운영과

순 번	구 분	내 용
1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13-기획-1)	<ul> <li>추진방향</li> <li>- 제3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일부(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li> <li>-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후 제4기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 선정 및양형기준 마련</li> <li>- 제1기 양형기준(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 제2기 양형기준(악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 및 제3기 양형기준(증권ㆍ금융, 지식자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수정ㆍ보완 검토 - 제1, 2, 3기 양형기준 운영점검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 개선사항 검토</li> <li>• 구체적 방안</li> <li>- 전문위원단의 양형기준 초안 작성</li> <li>- 양형기준안 의결</li> <li>- 공청회ㆍ공개토론회</li> <li>- 관계기관 의견조회</li> <li>- 양형기준 조개 및 시행</li> </ul>

순 번	구 분	내 용
2	4기 양형위원회 출범 지원 (13-기획-2)	<ul> <li>제4기 양형위원회 구성         <ul> <li>2013, 4, 26, 제3기 양형위원회 임기 만료 및 2013, 4, 27,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예정</li> <li>위원장, 위원 12인 임명·위촉</li> </ul> </li> <li>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ul> <li>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li> <li>전체회의 일정 수립 및 예상 회의 의안 정리</li> <li>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및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수립·보고</li> </ul> </li> </ul>
3	전문위원 업무 지원 (13-기획-3)	<ul> <li>전문위원단 구성         <ul> <li>전문위원 임기 만료 · 사임 등에 따라 수시로 연임 위촉 또는 신규 위촉</li> <li>전문위원 임기 만료 · 사임 등에 따라 수시로 연임 위촉 또는 신규 위촉</li> <li>전문위원 연구 활동의 전문성 · 연속성 · 효율성 · 객관성을 고려하여 조직 정비</li> </ul> </li> <li>전문위원단 활동 계획         <ul> <li>전문위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2013년도 연구계획 확정 및 위원회 의결</li> <li>전문위원을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과제 분장</li> <li>위원회에서 선정한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 초 안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li> </ul> </li> <li>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 및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li> </ul>
4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13-기획-4)	<ul> <li>취지         <ul> <li>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 · 투명화 구현</li> <li>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li> </ul> </li> <li>구체적 내용         <ul> <li>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 공개토론회 개최</li> <li>법원 · 관계 국가기관 ·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단체 · 전문가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 이행</li> <li>양형위원회 주최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검토</li> <li>현행 양형기준 시행 이후 일반인 및 전문가의 양형에 대한 인식변화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li> <li>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등을 통한 여론수렴</li> </ul> </li> </ul>

순 번	구 분	내 용
5	양형기준 공개 (13-기획-5)	<ul> <li>취지         <ul> <li>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형기준 공개는 필수적 절차임</li> <li>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책자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공개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li> <li>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홍보효과 기대</li> </ul> </li> <li>구체적 내용         <ul> <li>양형기준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li> <li>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함께 게시</li> <li>양형기준 책자 발간하여 법원 · 국회 · 관계 국가기관 ·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단체 · 언론기관 등에 배부</li> <li>영문판 양형기준 책자 발간 및 관계기관 배부</li> </ul> </li> </ul>
6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 (13-기획-6)	<ul> <li>추진방향         <ul> <li>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li> <li>2012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정리 및 2013년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li> <li>연간보고서 작성 및 발간</li> <li>연간보고서 국회 보고 및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 관·단체·언론기관 등 관계기관 배부</li> </ul> </li> </ul>
7	자문위원 회의 개최 (13-기획-7)	<ul> <li>취지</li> <li>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반영</li> <li>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 · 투명화</li> <li>구체적 내용</li> <li>임기 만료 · 사임 등에 따른 자문위원 연임 위촉 또는 신규 위촉</li> <li>2013년 회의 개최 계획 수립</li> <li>양형기준안에 관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과정에 반영</li> </ul>

순 번	구 분	내 용	
8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13-기획-8)	<ul> <li>취지</li> <li>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 · 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 경험 공유</li> <li>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의 대외 홍보</li> <li>구체적 방안</li> <li>미국, 유럽 등 각국의 양형위원회와 사법기관 방문하여 양형실무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 경험 공유</li> <li>외국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원 초빙 심포지엄,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검토</li> <li>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관한 국외 홍보</li> <li>영문판 양형기준 책자 발간 및 배부를 통한 양형기준 국외 홍보</li> </ul>	
9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홍보 (13-기획-9)	♥ ↑제석 방안 - 양형위워회 확동에 대한 국회 보고	
10	양형위원회 각종 자료집 발간 (13-기획-10)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위원회 · 소위원회 · 전문위원 · 자문위원 · 운영지원단의 회의,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 및 발간</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양형위원회 · 전문위원 · 자문위원 등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집 발간 · 등록</li> </ul> </li> </ul>	

### Ⅱ 자료조사과

순 번	구분	내 용
1	양형자료조사 (13-자료-1)	<ul> <li>추진 방향         <ul> <li>제4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li> <li>제1, 2, 3기 양형기준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또는 설정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li> <li>필요에 따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예상범죄를 중심으로 미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li> <li>양형자료조사 실시</li> <li>양형자료본석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점검</li> </ul> </li> </ul>
2	양형조사표 개선 (13-자료-2)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조사표의 수정, 개선을 통한 양형자료조사의 신뢰도 제고</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양형자료분석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조사표를 수정 · 보완</li> <li>수정 · 보완된 양형자료조사표를 신양형정보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양형인자의 체계적 사후 관리체제 구축</li> </ul> </li> </ul>
3	양형자료 분석관 교육 (13-자료-3)	<ul> <li>추진방향</li> <li>신규 전입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교육</li> <li>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함양</li> <li>구체적 방안</li> <li>양형위원회의 현황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교육</li> <li>양형인자의 확인과 평가 등 양형실무 이론 교육</li> <li>범죄유형별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실습</li> <li>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 증진</li> </ul>
4	양형자료 분석관 업무 개선 (13-자료-4)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자료분석관 제도의 운영 개선</li> <li>양형자료분석관 업무 통일 방안 모색</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양형자료분석관 업무편람 수정 및 보완</li> <li>전국 양형자료분석관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li> <li>양형자료분석관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li> <li>연 4회 토론회 및 연 1회 워크숍 개최</li> </ul> </li> </ul>

순 번	구분	내 용
5	양형기준 운영점검 (13-자료-5)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기준 시행 이후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 확인</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운영지원단 및 각급 법원 양형자료분석관 등을 통한 효율적 양형기준 운영점검 체계 구축</li> <li>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점검실시</li> <li>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정기적 보고 및 책자 발간</li> </ul> </li> </ul>

### Ⅲ 통계분석과

순 번	구분	내 용
1	양형자료 통계분석 (13-통계-1)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에 대한 통계분석</li> <li>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사건리스트 및 표본 추출</li> <li>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통계분석</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제1, 2, 3기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li> <li>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의 양형조사에 대한 통계분석</li> <li>조사대상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확정사건 양형 통계분석</li> <li>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양형기준 설정대상 사건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li> <li>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직회귀분석 등)</li> </ul> </li> </ul>
2	전문위원 지원 (13-통계-2)	<ul> <li>추진방향         <ul> <li>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지원을 통해 전문위원의 연구활동 지원</li> <li>구체적 방안</li> <li>조사된 양형자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한양형 통계자료 제공</li> </ul> </li> <li>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추가도입을 통한 전문위원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업무 지원</li> <li>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및 기타 통계자료 제공</li> <li>전문위원 양형기준 연구에 필요한 사건리스트 및 판결문 제공</li> </ul>

순 번	구분	내 용
3	양형기준 운영점검 통계분석 (13-통계-3)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운영점검에 대한 통계분석</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에 대한 운영점검 결과 정리 및 통계분석자료 제공</li> <li>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에 대한 리스트 추출 및 판결문 보존작업</li> <li>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직회귀분석 등)</li> </ul> </li> </ul>
4	양형자료 분석업무 개선 (13-통계-4)	<ul> <li>추진방향         <ul> <li>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양형자료의 효율적 추출 및 통계제공</li> <li>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의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및 모집단의 표본추출에 대한 양형통계분석 실무편람 마련</li> </ul> </li> <li>구체적 방안         <ul> <li>분석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양형자료의 신속한 취합 및 추출을 통해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수집</li> <li>분석업무시스템에 포함된 양형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통계분석을 적시 처리</li> <li>양형기준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통계관련 내용에 대한 실무편람 마련</li> </ul> </li> </ul>